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19
----------	------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이정인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11월 29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정인 의원)

1. 제안이유

-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복지서비스제공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타 복지영역에 비하여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나. 정신질환자에게 거주, 취업, 평생교육, 권익옹호, 위기지원 등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회복과 재활하며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미흡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은 매우 더딘 상황임.

- 다. 특히, 정신질환을 질병과 그에 대한 치료의 관점으로만 바라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재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정신질환자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으며, 재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라. 이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자치구에 대한 지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조, 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음.

2.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나. 정신질환자관련 정책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신설)
-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마. 정신질환자가 위기상황 시 지역에서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쉼터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3조 신설)
- 바. 장기입원 등의 문제를 배제하고, 폐쇄병동을 축소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치료환경을 위해 치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사. 정신질환자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으나 현실로 정신질환자에게 지역사회 주거, 평생교육, 권익옹호 위기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과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바 이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조, 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입법의도와 관련하여

-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대상의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는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전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을 질병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병원 중심으로 입원과 치료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과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34

조), 평생교육지원(제35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제36조), 지역사회 거주·재활·치료 등 통합지원(제37조) 등에 관한 지원을 명문화 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복지전달체계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한 바 목적조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복지전달체계와 정신건강복지전달체계 사이의 통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제2조¹⁾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고 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전달체계를 분리하고 있음.

나. 당사자의 참여 관련

-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협이

1)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생략>

있는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3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당사자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안 제3조제5항).

- 개정안 제8조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시 당사자 자조단체, 당사자의 가족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제3항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탈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당사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관련

- 시장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 제9조제2항은 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 제9조제3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광역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제4항과 제5항은 각각 광역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 제9조제7항은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쟁점이 발생하는 것은 안 제9조제2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상근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현재 광역센터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센터장, 상임팀장의 상근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음.

라.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

- 개정안 제10조는 시장이 직접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상위법의 유형분류에 따르고 있음.
- 개정안 제13조는 지역사회안정화 지원으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병상, 위기안전전화, 동료지원 쉼터, 안정화 쉼터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응급병상의 경우 보라매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료지원 쉼터의 경우 동료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동료지원사업의 일환임, 안정화 쉼터의 경우 지역사회 전환시설에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차이점이 존재함.

마. 탈원화관련

-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한 목적이 탈원화와 지역사회재활이니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탈원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14조의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환경을 개선하는

안으로 개정안 제14조제1항 불필요한 입원치료의 예방, 제14조제2항 외래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14조제3항 폐쇄병동의 개방병동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 제15조는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하여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3. 동료지원가 양성, 4. 권익옹호, 5. 평생교육, 6.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16조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있어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인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명문화하고 있음.

바.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 개정안 제17조의 경우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자조단체나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 육성하며 이들을 위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집행부서 의견

-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개정안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정신보건센터장의 상근근무 조항

- | |
|--|
| -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사권은 집행기관 고유의 권한에 해당하고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 |
|--|

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1추57, 2000추36 등)

- 또한 2015.11.27.(2015-0079)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뢰한 법률자문결과 해당 안은 ① 시장의 고유한 인사권의 행사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침해하거나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시장의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수령한 바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5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 취지, 보건복지부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본 조항은 시장의 고유인사권 및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센터장의 상근 근무조항은 시장의 인사권 침해부분이 있으므로 '센터의 장은 상근으로 한다'를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 필요.

○ 개정안 제13조에 따른 동료지원쉼터, 안정화 쉼터 등 시책 마련 조항

- 해당 동료지원쉼터, 안정화 쉼터 설치 등이 상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시설이나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정신질환자 동료가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동료지원쉼터 설치의 필요하나,
- 안정화 쉼터의 경우 동료지원쉼터와 기능이 중복됨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봄

- 개정안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센터장의 상근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법의 한계 등과 관련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 쉼터기능의 중복에 관하여서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동료지원가인가 전문가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바 특정한 서비스가 특정한 상황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실행방안을

집행부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부분의 경우 안정화 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안정화쉼터의 경우 현행 조례의 제9조에 명시된 일시보호 쉼터(정신재활시설 내 설치)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동료지원쉼터의 경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동료지원가에 의한 서비스를 의미함.

4 종합의견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지원의 필요성, 탈원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규정하는 개정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상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내용이 법률보다 더 수익적인 경우에는 법률의 취지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규율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그 조례는 적법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례는 위법하다는 우리 법의 일관적인 판례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기존의 조례에 비하여 당사자주의의 입장이 반영되었으며

서비스의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일부 사업에 대하여서는 서울시가 사업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제6조의 실태조사 및 제15조의 사회통합시책)하고 있어 집행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하여 서울시의 반대의견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119
----------	-------------

제안연월일 : 2019년 11월 29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상근조항을 수정함.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상근”을 “상근을 원칙으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 및 「 <u>장애인복지법</u> 」----- ----- ----- ----- ----- ----- ----- ----- ----- -----.	<u><개정안과 같음></u>
제2조(정의) 이 조례	제2조(정의) -----	<u><개정안과 같음></u>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

<개정안과 같음>

2. -----

-----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 -----

-----.

<개정안과 같음>

3.、4. (생략)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6. (생략)

7.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3.、4. (현행과 같음)

5. -----

----- 법
제19조제1항 -----

-----.

6. (현행과 같음)

7. -----

----- 사람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정신건
강증진을 위하여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
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

-----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제5조(지역계획의 수
립과 시행) 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특
별시(이하 "시"라 한
다) 단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
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
은 「지역보건법」 제
7조에 따른 지역보

제5조(지역사회 통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법 제7조, 「장애
인복지법」 제10조
의2, 「지역보건
법」 제7조를 연계
하여 시 -- 지역사회
통합 -----이하 "지
역사회 통합계획"이
라 한다-----.
<후단 삭제>

<개정안과 같음>

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제6조(복지서비스 실행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② -----

--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학교 -----
--.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
에 관한 전문성이 있
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
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
반에 대해 조사·검

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등록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

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
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하 “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
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
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
을 위하여 적극적으
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를 직
접 운영하거나 정신
건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정신건강증
진시설 또는 비영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센터의 장은 상근
을 원칙으로 한다.

③~⑦
<개정안과 같음>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생략)

제10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

----- 설치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정신질환자 등-----

4. -----

----- 정신질환자 등-----

5.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③ -----

----- 비영리법
인에 -----
-----.

제11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

② -----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1.、2. (생략)

3. 정신건강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5. (생략)

③ (생략)

제11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장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 사업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

제13조(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의 악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안전전화, 응급병상, 동료지원센터, 안정화 쉼터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
의 제공

<신 설>

제14조(치료환경의 개

<개정안과 같음>

선) ① 시장은 정신
질환자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에서 외래치료를 받
는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치료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쇄병동
으로 운영하는 정신
의료기관을 개방병동
으로 전환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정신질환자 사

<개정안과 같음>

회통합지원) ① 시장
은 정신질환자를 대
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2.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5. 평생교육

6. 문화·예술·여가·

체육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사회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

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정신질환자 가

족지원) 시장은 정신

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이 정

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개정안과 같음>

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회복에 관한 정보제공

2.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가족 상담 지원

4.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

-----옹호-----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및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운영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을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9조 제1항의”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애극복과 사회적응”을 “회복과 사회통합”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 계획에 따라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를 “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지역보건법」 제7조를 연계하여 시”로,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를 “이하 “지역사회 통합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복지서비스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삽입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정신건강 상”을 “정신건강상”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를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를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

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정신질환자등”을 각각 “정신질환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비영리법인에게”를 “비영리법인에”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 사업”을 삽입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의 악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안전전화, 응급병상, 동료지원 쉼터, 안정화 쉼터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치료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5. 평생교육
6.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회복에 관한 정보제공
2.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가족 상담 지원
4.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보호”를 “옹호”로,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를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및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운영비·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의”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 중 “바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p>제1조(목적)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u>장애인 복지법</u>」-----</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2. ----- <p>----- <u>사회복지·교육</u></p>

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4. (생략)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6. (생략)

7.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

주거, 근로 -----

-----.

3. 4. (현행과 같음)

5. -----
----- 법 제19조
제1항 -----

-----.

6. (현행과 같음)

7. -----

----- 사람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복과 사회통

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

합 -----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제5조(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 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지역보건법」 제7조를 연계하여 시 -- 지역사회 통합 -----이하 "지역사회 통합계획"이라 한다-----
-. 〈후단 삭제〉

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제6조(복지서비스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 정신건강상 -----
-----.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자치구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

-----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 -----
-----.

② -----

-----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학교 -----.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하게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등록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정

〈삭 제〉

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유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정신질환자 등 -----

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생략)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 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 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정신건강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의 연계체

4. -----

정신질환자 등-----

5.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 비영리법인에
-----.

제11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계 구축지원

4. 5. (생략)

③ (생략)

제11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시장

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
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
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
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4.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장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
사업

제13조(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시

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
질환자가 정신질환의 악화 등 위
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
하여 위기안전전화, 응급병상, 동
료지원 쉼터, 안정화 쉼터 등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신 설>

<신 설>

제14조(치료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외래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신 설〉

제14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5. 평생교육

6.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회복에 관한 정보제공

2.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가족 상담 지원

4.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

-옹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생략)

제16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단체 및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운영비·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의 -----.

제18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9조(준용) -----
사항은 -----

-----.